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38호 2020. 5. 4.(월)

고 시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----- 2

공 고

-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----- 3
○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----- 4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고시 제 2020-12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5월 4일

목 포 시 장

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순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630번길 11	2020.04.27.	건물멸실
2	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33	2020.04.27.	폐지 후 재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628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목포시 공고 제 2020-692호

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

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 유 : 노후화에 따른 공인(인증기용) 교체
2. 등록 및 폐기일 : 2020. 5. 4.(월)
3. 공인명 및 인영

구분	공 인 명	인 영	규격, 서체	비 고
등록	대성동장인 민원사무전용		2.1cm*2.1cm 푸른전남체	인증기용
	신흥동장인 민원사무전용		2.1cm*2.1cm 푸른전남체	"
폐기	대성동장인 민원사무전용		2.1cm*2.1cm 푸른전남체	"
	신흥동장인 민원사무전용		2.1cm*2.1cm 푸른전남체	"

2020년 5월 4일

목 포 시 장

목포시 공고 제2020-720호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5. 4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정부 ‘공공부문 일자리충원 계획’에 따라 정부정책 및 우리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,
- 직급별 불균형 해소, 정·현원 불부합 조정, 불합리한 복수직렬 조정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을 조정

2. 주요내용

가. **정원관리기관별** 정원 조정내역

구 분	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
현 행	<u>1,259</u>	<u>609</u>	23	<u>97</u>	263	<u>267</u>
개 정	<u>1,296</u>	<u>621</u>	23	<u>98</u>	263	<u>291</u>
증 감	<u>⊕37</u>	<u>⊕12</u>	-	<u>⊕1</u>	-	<u>⊕24</u>

나.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

구 분	계	정무직	일반직	연구직	지도직
현 행	<u>1,259</u>	1	<u>1,238</u>	17	3
개 정	<u>1,296</u>	1	<u>1,275</u>	17	3
증 감	<u>⊕37</u>	-	<u>⊕37</u>	-	-

다.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
《일 반 직》

구 분	계	3·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현 행	<u>1,238</u>	10	68	248	<u>327</u>	340	<u>245</u>
개 정	<u>1,275</u>	10	68	248	<u>328</u>	340	<u>281</u>
증 감	<u>⊕37</u>	-	-	-	<u>⊕1</u>	-	<u>⊕36</u>

※ 정무직(1), 연구직(17), 지도직(3)은 변동없음

라. 직렬별 정원 조정 내역

구 분		계	본청	의회	직속	사업소	동
합 계		<u>⊕37</u>	<u>⊕12</u>	-	<u>⊕1</u>	-	<u>⊕24</u>
7급	소 계	<u>⊕1</u>	<u>⊕1</u>	-	-	-	
	농 업	<u>⊕1</u>	<u>⊕1</u>	-	-	-	-
8급	소 계	-	<u>△1</u>	-	<u>⊕1</u>	-	-
	간 호	<u>⊕1</u>	-	-	<u>⊕1</u>	-	-
	농 업	<u>△1</u>	<u>△1</u>	-	-	-	-
9급	소 계	<u>⊕36</u>	<u>⊕12</u>	-	-	-	<u>⊕24</u>
	행 정	<u>⊕24</u>	<u>⊕2</u>	-	-	-	<u>⊕22</u>
	사회복지	<u>⊕11</u>	<u>⊕9</u>	-	-	-	<u>⊕2</u>
	행정+방재안전	<u>⊕1</u>	<u>⊕1</u>	-	-	-	-

3. 개정 규칙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 대조표 : 별첨

5. 관계법령

-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제24조, 제29조, 제30조
- 『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』제4조, 제5조

6. 입법예고 : 2020. 5. 4. ~ 5. 11.(7일간)

-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 조직내부 인력 조정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축소
 - ※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 제38조
 -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·정원의 감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※ 『목포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정』 제10조
 -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,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7. 규제심사(심의) 대상여부 검토 : 해당없음

8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개선사항없음

9. 예산 수반사항

구 분	증감인원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계	37	37		1,453,367,440	
7급	1	1	51,424,120	51,424,120	5호봉
9급	36	36	38,942,870	1,401,943,320	1호봉

10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[우58613],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(자치행정과)]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
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(☎061-270-3439,
FAX 270-879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비용소요 추계서 (1)

1. 관련 법규명
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-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- 기 구 : 변동 없음
-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

구 분	증감인원	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계	9급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증원	36	36	36	38,942,870	1,401,943,320	1호봉

3. 비용 소요 내역

(9급 1호봉 기준)

구 분	소요비용(원)	산 출 근 거	비고
총 계	38,942,870		
○ 인건비	28,529,870		
- 기본급	19,713,600	1,642,800원*12월	
- 수당	8,816,270		
• 정액급식비	1,680,000	140,000원*12월	
• 명절휴가비	1,971,360	1,642,800원*60%*2회	
• 연가보상비	941,870	1,642,800원*86%*1/30*20일	
• 시간외수당	4,223,040	8,798원*40시간*12월	
○ 직급보조비	1,740,000	145,000원*12월	
○ 이전경비	8,673,000		
- 성과상여금	2,451,680	2,228,800원*110%	
- 연금부담금 등	5,018,21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15.3361%	
- 국민건강보험금	1,091,26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3.335%	
- 장기요양보험금	111,850	(건강보험금*10.25%)	

4. 작성자

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

비용소요 추계서 (2)

1. 관련 법규명
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-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- 기 구 : 변동 없음
-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

구 분	증감인원	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계	7급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증원	1	1	1	51,424,120	51,424,120	5호봉

3. 비용 소요 내역

(7급 5호봉 기준)

구 분	소요비용(원)	산 출 근 거	비고
총 계	51,424,120		
○ 인건비	37,877,810		
- 기본급	27,003,600	2,250,300원*12월	
- 수당	10,874,210		
• 정액급식비	1,680,000	140,000원*12월	
• 명절휴가비	2,700,360	2,250,300원*60%*2회	
• 연가보상비	1,290,170	2,250,300원*86%*1/30*20일	
• 시간외수당	5,203,680	10,841원*40시간*12월	
○ 직급보조비	1,860,000	155,000원*12월	
○ 이전경비	11,686,310		
- 성과상여금	3,471,050	3,155,500원*110%	
- 연금부담금 등	6,626,55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15.3361%	
- 국민건강보험금	1,441,01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3.335%	
- 장기요양보험금	147,700	(건강보험금*10.25%)	

4. 작성자

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〔별표 1〕 및 〔별표 2〕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 정 >

[별표 1]

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(제2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계	본청	의회	직속	사업소	동
총 계		1,296	621	23	98	263	291
정무직	계	1	1				
	시장	1	1				
일반직	계	1,275	609	23	98	254	291
	3급	1	1				
	4급	9	5	1	1	2	
	5급	68	28	3	3	11	23
	6급	248	133	4	13	51	47
	7급	328	181	7	13	76	51
	8급	340	133	8	55	66	78
	9급	281	128	0	13	48	92
연구직	계	17	9			8	
	연구관						
	연구사	17	9			8	
지도직	계	3	2			1	
	지도관						
	지도사	3	2			1	

< 개 정 >

[별표 2]

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(제2조 관련)

직종별	직급	기관별 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총계			<u>1,296</u>	<u>621</u>	23	<u>98</u>	263	<u>291</u>
정무직		합 계	1	1				
		시 장	1	1				
일반직		일반직 합계	<u>1,275</u>	<u>609</u>	23	<u>98</u>	254	<u>291</u>
	3급	소계	1	1				
		행정	1	1				
	4급	소계	9	5	1	1	2	
		행정	3	3				
		기술	1			1		
		행정+기술	5	2	1		2	
	5급	소계	68	28	3	3	11	23
		행 정	19	7	1		0	11
		시 설	1	1				
		행정+사회복지	3	1				2
		행정+해양수산	1					1
		행정+공업	1				1	
		행정+보건	1					1
		행정+보건+환경	1	0			1	
		행정+시설	16	10	1		2	3
		행정+학예연구관	1	1				
		행정+사회복지+공업+해양수산	1					1
		행정+사회복지+보건	2	2				
		행정+사회복지+시설	1					1
		행정+방송통신	1	1				
		행정+공업+시설	4	2			2	
		행정+농업+녹지	1					1
		행정+시설+해양수산	2	2				
		행정+환경+시설	2	0			1	1
		행정+농업+해양수산	1					1
		행정+보건+간호	1			1		
		공업+보건+환경	1				1	
		공업+환경+시설	1				1	
		행정+공업+농업+농촌지도관	1	1				
		행정+녹지+시설+농촌지도관	1				1	
		행정+농업+해양수산+환경	1		1			
		행정+공업+환경+시설	1				1	
		행정+보건+약무+간호	1			1		
		보건+의무+약무+간호	1			1		

직종별	직급	기관별 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일반직	6급	소계	248	133	4	13	51	47
		행 정	59	30	3		4	22
		세 무	6	6				
		사회복지	8	3				5
		방 호	1	1				
		공 업	2				2	
		해양수산	2	2				
		보 건	1			1		
		시 설	3	1			2	
		행정+세무	5	3			1	1
		행정+사회복지	22	10				12
		행정+전산	8	7	1			
		행정+농업+녹지	1				1	
		행정+환경	5				5	
		행정+해양수산	2	2				
		행정+보건	3			3		
		행정+공업	8	5			3	
		행정+시설	47	32			15	
		행정+학예연구사	2	2				
		행정+농촌지도사	1					1
		공업+환경	1				1	
		공업+시설	3				3	
		공업+환경연구사	1				1	
		보건+식품위생	1			1		
		보건+약무	1			1		
		보건+간호	5			2		3
		행정+세무+시설	1	1				
		행정+전산+사회복지	2					2
		행정+사회복지+수의	1					1
		행정+사회복지+시설	1	1				
		행정+전산+시설	5	5				
		행정+전산+방송통신	2	2				
		행정+공업+시설	6	6				
		행정+공업+학예연구사	1	1				
		행정+녹지+시설	3				3	
		행정+해양수산+시설	3	3				
		행정+보건+식품위생	1			1		
		행정+보건+간호	1			1		
		행정+보건+환경	1				1	
		행정+환경+시설	1				1	
		행정+시설+학예연구사	1	1				
		행정+시설+녹지+농촌지도사	1				1	
		공업+보건+환경연구사	1				1	
		보건+의료기술+간호	1			1		
		의료기술+약무+간호	1			1		
		보건+의료기술+약무	1			1		
		행정+공업+시설+방송통신	1	1				
		행정+농업+환경+농촌지도사	1	1				
		행정+농업+수의+농촌지도사	2	2				
		공업+수의+환경+환경연구사	1				1	
		운 전	3	2			1	

직종별	직급	기관별 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		건축운영	1	1				
		통신운영	1	1				
		전기운영	2				2	
		기계운영	1				1	
		전기운영+기계운영	1				1	
		사무운영	1	1				
일반직	7급	소계	328	181	7	13	76	51
		행 정	111	57	6		18	30
		세 무	23	22			1	
		사회복지	32	14				18
		전 산	6	6				
		방 호	1				1	
		공 업	32	15			17	
		농 업	2	2				
		녹 지	3				3	
		해양수산	5	5				
		보 건	1	1				
		의료기술	1			1		
		간 호	1			1		
		환 경	4				4	
		시 설	25	17			8	
		방송통신	3	3				
		행정+세무	3	3				
		행정+사회복지	7	4				3
		행정+전산	3	3				
		행정+공업	3	3				
		행정+농업	1	1				
		행정+녹지	1				1	
		행정+해양수산	1	1				
		행정+환경	5	1			4	
		행정+시설	4	3			1	
		행정+학예연구사	1	1				
		전산+방송통신	2	2				
		공업+시설	1				1	
		공업+환경	1				1	
		보건+식품위생	4			4		
		보건+약무+간호	1			1		
		보건+간호	6	1		5		
		의료기술+간호	1			1		
		행정+공업+시설	1	1				
		사회복지+보건+간호	1	1				
		운 전	15	6	1		8	
		위 생	2	1			1	
		토목운영	1				1	
		건축운영	2	2				
		전기운영	3	1			2	
		기계운영	5	1			4	
		열관리운영	1	1				
		사무운영	2	2				

직종별	직급	기관별 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일반직	8급	소계	340	133	8	55	66	78
		행 정	94	46	1		16	31
		세 무	10	9			1	
		사회복지	45	11				34
		속 기	3		3			
		전 산	2	1	1			
		공 업	14	5		1	8	
		농 업	1	1				
		녹 지	5				5	
		해양수산	4	4				
		보 건	5			5		
		식품위생	2			2		
		의료기술	5			5		
		간 호	34	1		33		
		환 경	1				1	
		시 설	28	20			8	
		방송통신	3	3				
		행정+사회복지+전산	1	1				
		행정+사회복지	13					13
		행정+세무	2	2				
		행정+전산	1				1	
		행정+농업	2	2				
		행정+공업	1	1				
		행정+보건	2	1		1		
		행정+환경	1	1				
		행정+시설	6	5			1	
		행정+방재안전	1	1				
		전산+방송통신	1	1				
		공업+환경	4				4	
		공업+시설	1				1	
		보건+식품위생	2			2		
		보건+간호	3			3		
		의료기술+간호	2			2		
		시설+방재안전	1	1				
		행정+해양수산+시설	1	1				
		전산+방송통신+시설	1	1				
		사회복지+간호	1			1		
		방 호	1	1				
		운 전	14	6	1		7	
		위 생	1	1				
		건축운영	1	1				
		통신운영	1		1			
		전기운영	6	2			4	
		기계운영	7	1			6	
		열관리운영	1	1				
		화공운영	1				1	
		사무운영	4	1	1		2	

직종별	직급	기관별 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일반직	9급	소계	281	128	0	13	48	92
		행 정	85	35			6	44
		세 무	5	5				
		전 산	3	3				
		사회복지	74	31		3		40
		공 업	16	7			9	
		농 업	1	1				
		녹 지	3				3	
		해양수산	1	1				
		보 건	6			6		
		환 경	3				3	
		시 설	18	14			4	
		방송통신	3	3				
		행정+사회복지	5					5
		행정+전산	2	2				
		행정+해양수산	1	1				
		행정+보건	1	1				
		행정+시설	4	2			2	
		행정+방재안전	1	1				
		보건+의료기술+간호	1			1		
		방 호	2	2				
		운 전	21	9		3	9	
		시설관리	2	1			1	
		건축운영	1				1	
		전화상담운영	2	2				
		전기운영	1				1	
		기계운영	10	3			7	
		화공운영	1				1	
		사무운영	8	4			1	3
연구직		연구사합계	17	9			8	
		학예연구사	11	8			3	
		환경연구사	5				5	
		기록연구사	1	1				
지도직		지도사합계	3	2			1	
		농촌지도사	3	2			1	

신.구조문 대비표(별표1)

현행								개정안							
〔별표1〕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	〔별표1〕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
기관별 직급별		계	본청	의회	직속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별		계	본청	의회	직속	사업소	동
총 계		1,259	609	23	97	263	267	총 계		1,296	621	23	98	263	291
정무직	계	1	1					정무직	계	1	1				
	시장	1	1						시장	1	1				
일반직	계	1,238	597	23	97	254	267	일반직	계	1,275	609	23	98	254	291
	3급	1	1						3급	1	1				
	4급	9	5	1	1	2			4급	9	5	1	1	2	
	5급	68	28	3	3	11	23		5급	68	28	3	3	11	23
	6급	248	133	4	13	51	47		6급	248	133	4	13	51	47
	7급	327	180	7	13	76	51		7급	328	181	7	13	76	51
	8급	340	134	8	54	66	78		8급	340	133	8	55	66	78
	9급	245	116	0	13	48	68		9급	281	128	0	13	48	92
연구직	계	17	9			8		연구직	계	17	9			8	
	연구관								연구관						
	연구사	17	9			8			연구사	17	9			8	
지도직	계	3	2			1		지도직	계	3	2			1	
	지도관								지도관						
	지도사	3	2			1			지도사	3	2			1	

신.구조문 대비표(별표2)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〔별표2〕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〔별표2〕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
총계	1,259	609	23	97	263	267 (12)	총계	1,296	621	23	98	263	291
정무직 계	1	1					정무직 계	1	1				
시 장	1	1					시 장	1	1				
일반직 계	1,238	597	23	97	254	267 (12)	일반직 계	1,275	609	23	98	254	291
3급 소계	1	1					3급 소계	1	1				
행 정	1	1					행 정	1	1				
4급 소계	9	5	1	1	2		4급 소계	9	5	1	1	2	
행 정	3	3					행 정	3	3				
기 술	1			1			기 술	1			1		
행정+기술	5	2	1		2		행정+기술	5	2	1		2	
5급 소계	68	28	3	3	11	23	5급 소계	68	28	3	3	11	23
행 정	19	7	1			11	행 정	19	7	1			11
시 설	1	1					시 설	1	1				
행정+사회복지	3	1				2	행정+사회복지	3	1				2
행정+해양수산	1					1	행정+해양수산	1					1
행정+공업	1				1		행정+공업	1				1	
행정+보건	1					1	행정+보건	1					1
행정+보건+환경	1				1		행정+보건+환경	1				1	
행정+시설	16	10	1		2	3	행정+시설	16	10	1		2	3
행정+학예연구관	1	1					행정+학예연구관	1	1				
행정+사회복지+ 공업+해양수산	1					1	행정+사회복지+ 공업+해양수산	1					1
행정+사회복지+ 보건	2	2					행정+사회복지+ 보건	2	2				
행정+사회복지+ 시설	1					1	행정+사회복지+ 시설	1					1
행정+방송통신	1	1					행정+방송통신	1	1				
행정+공업+시설	4	2			2		행정+공업+시설	4	2			2	
행정+농업+녹지	1					1	행정+농업+녹지	1					1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행정+시설+ 해양수산	2	2					행정+시설+ 해양수산	2	2				
행정+환경+시설	2				1	1	행정+환경+시설	2				1	1
행정+농업+해양 수산	1					1	행정+농업+해양 수산	1					1
행정+보건+간호	1			1			행정+보건+간호	1			1		
공업+보건+환경	1				1		공업+보건+환경	1				1	
공업+환경+시설	1				1		공업+환경+시설	1				1	
행정+공업+농업+ 농촌지도관	1	1					행정+공업+농업+ 농촌지도관	1	1				
행정+녹지+시설+ 농촌지도관	1				1		행정+녹지+시설+ 농촌지도관	1				1	
행정+농업+해양 수산+환경	1		1				행정+농업+해양 수산+환경	1		1			
행정+공업+환경+ 시설	1				1		행정+공업+환경+ 시설	1				1	
행정+보건+약무+ 간호	1			1			행정+보건+약무+ 간호	1			1		
보건+의무+약무+ 간호	1			1			보건+의무+약무+ 간호	1			1		
6급 소계	248	133	4	13	51	47	6급 소계	248	133	4	13	51	47
행 정	59	30	3		4	22	행 정	59	30	3		4	22
세 무	6	6					세 무	6	6				
사회복지	8	3				5	사회복지	8	3				5
방 호	1	1					방 호	1	1				
공 업	2				2		공 업	2				2	
해양수산	2	2					해양수산	2	2				
보 건	1			1			보 건	1			1		
시 설	3	1			2		시 설	3	1			2	
행정+세무	5	3			1	1	행정+세무	5	3			1	1
행정+사회복지	22	10				12	행정+사회복지	22	10				12
행정+전산	8	7	1				행정+전산	8	7	1			
행정+농업	1				1		행정+농업	1				1	
행정+환경	5				5		행정+환경	5				5	
행정+해양수산	2	2					행정+해양수산	2	2				
행정+보건	3			3			행정+보건	3			3		
행정+공업	8	5			3		행정+공업	8	5			3	
행정+시설	47	32			15		행정+시설	47	32			15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행정+학예연구사	2	2					행정+학예연구사	2	2				
행정+농촌지도사	1					1	행정+농촌지도사	1					1
공업+환경	1				1		공업+환경	1				1	
공업+시설	3				3		공업+시설	3				3	
공업+환경연구 사	1				1		공업+환경연구 사	1				1	
보건+식품위생	1			1			보건+식품위생	1			1		
보건+약무	1			1			보건+약무	1			1		
보건+간호	5			2		3	보건+간호	5			2		3
행정+세무+시설	1	1					행정+세무+시설	1	1				
행정+전산+사회 복지	2					2	행정+전산+사회 복지	2					2
행정+사회복지+ 수의	1					1	행정+사회복지+ 수의	1					1
행정+사회복지+ 시설	1	1					행정+사회복지+ 시설	1	1				
행정+전산+시설	5	5					행정+전산+시설	5	5				
행정+전산+방송 통신	2	2					행정+전산+방송 통신	2	2				
행정+공업+시설	6	6					행정+공업+시설	6	6				
행정+공업+학예 연구사	1	1					행정+공업+학예 연구사	1	1				
행정+녹지+시설	3				3		행정+녹지+시설	3				3	
행정+해양수산+ 시설	3	3					행정+해양수산+ 시설	3	3				
행정+보건+식품 위생	1			1			행정+보건+식품 위생	1			1		
행정+보건+간호	1			1			행정+보건+간호	1			1		
행정+보건+환경	1				1		행정+보건+환경	1				1	
행정+환경+시설	1				1		행정+환경+시설	1				1	
행정+시설+학예 연구사	1	1					행정+시설+학예 연구사	1	1				
행정+시설+녹지 +농촌지도사	1				1		행정+시설+녹지 +농촌지도사	1				1	
공업+보건+환경 연구사	1				1		공업+보건+환경 연구사	1				1	
보건+의료기술+ 간호	1			1			보건+의료기술+ 간호	1			1		
의료기술+약무+ 간호	1			1			의료기술+약무+ 간호	1			1		
보건+의료기술+ 약무	1			1			보건+의료기술+ 약무	1			1		
행정+공업+시설 +방송통신	1	1					행정+공업+시설 +방송통신	1	1				
행정+농업+환경 +농촌지도사	1	1					행정+농업+환경 +농촌지도사	1	1			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행정+농업+수의 +농촌지도사	2	2					행정+농업+수의 +농촌지도사	2	2				
공업+수의+환경 +환경연구사	1				1		공업+수의+환경 +환경연구사	1				1	
운 전	3	2			1		운 전	3	2			1	
건축운영	1	1					건축운영	1	1				
통신운영	1	1					통신운영	1	1				
전기운영	2				2		전기운영	2				2	
기계운영	1				1		기계운영	1				1	
전기운영+기계 운영	1				1		전기운영+기계 운영	1				1	
사무운영	1	1					사무운영	1	1				
7급 소계	327	180	7	13	76	51	7급 소계	328	181	7	13	76	51
행 정	111	57	6		18	30	행 정	111	57	6		18	30
세 무	23	22			1		세 무	23	22			1	
사회복지	32	14				18	사회복지	32	14				18
전 산	6	6					전 산	6	6				
방 호	1				1		방 호	1				1	
공 업	32	15			17		공 업	32	15			17	
농 업	1	1					농 업	2	2				
녹 지	3				3		녹 지	3				3	
해양수산	5	5					해양수산	5	5				
보 건	1	1					보 건	1	1				
의료기술	1			1			의료기술	1			1		
간 호	1			1			간 호	1			1		
환 경	4				4		환 경	4				4	
시 설	25	17			8		시 설	25	17			8	
방송통신	3	3					방송통신	3	3				
행정+세무	3	3					행정+세무	3	3				
행정+사회복지	7	4				3	행정+사회복지	7	4				3
행정+전산	3	3					행정+전산	3	3				
행정+공업	3	3					행정+공업	3	3				
행정+농업	1	1					행정+농업	1	1			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행정+녹지	1				1		행정+녹지	1				1	
행정+해양수산	1	1					행정+해양수산	1	1				
행정+환경	5	1			4		행정+환경	5	1			4	
행정+시설	4	3			1		행정+시설	4	3			1	
행정+학예연구사	1	1					행정+학예연구사	1	1				
전산+방송통신	2	2					전산+방송통신	2	2				
공업+시설	1				1		공업+시설	1				1	
공업+환경	1				1		공업+환경	1				1	
보건+식품위생	4			4			보건+식품위생	4			4		
보건+약무+간호	1			1			보건+약무+간호	1			1		
보건+간호	6	1		5			보건+간호	6	1		5		
의료기술+간호	1			1			의료기술+간호	1			1		
행정+공업+시설	1	1					행정+공업+시설	1	1				
사회복지+보건+간호	1	1					사회복지+보건+간호	1	1				
운 전	15	6	1		8		운 전	15	6	1		8	
위 생	2	1			1		위 생	2	1			1	
토목운영	1				1		토목운영	1				1	
건축운영	2	2					건축운영	2	2				
전기운영	3	1			2		전기운영	3	1			2	
기계운영	5	1			4		기계운영	5	1			4	
열관리운영	1	1					열관리운영	1	1				
사무운영	2	2					사무운영	2	2				
8급 소계	340	134	8	54	66	78	8급 소계	340	133	8	55	66	78
행 정	94	46	1		16	31	행 정	94	46	1		16	31
세 무	10	9			1		세 무	10	9			1	
사회복지	45	11				34	사회복지	45	11				34
속 기	3		3				속 기	3		3			
전 산	2	1	1				전 산	2	1	1			
공 업	14	5		1	8		공 업	14	5		1	8	
농 업	2	2					농 업	1	1				

현							개 정 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녹 지	5				5		녹 지	5				5	
해양수산	4	4					해양수산	4	4				
보 건	5			5			보 건	5			5		
식품위생	2			2			식품위생	2			2		
의료기술	5			5			의료기술	5			5		
간 호	33	1		32			간 호	34	1		33		
환 경	1				1		환 경	1				1	
시 설	28	20			8		시 설	28	20			8	
방송통신	3	3					방송통신	3	3				
행정+사회복지 +전산	1	1					행정+사회복지 +전산	1	1				
행정+사회복지	13					13	행정+사회복지	13					13
행정+세무	2	2					행정+세무	2	2				
행정+전산	1				1		행정+전산	1				1	
행정+농업	2	2					행정+농업	2	2				
행정+공업	1	1					행정+공업	1	1				
행정+보건	2	1		1			행정+보건	2	1		1		
행정+환경	1	1					행정+환경	1	1				
행정+시설	6	5			1		행정+시설	6	5			1	
행정+방재안전	1	1					행정+방재안전	1	1				
전산+방송통신	1	1					전산+방송통신	1	1				
공업+환경	4				4		공업+환경	4				4	
공업+시설	1				1		공업+시설	1				1	
보건+식품위생	2			2			보건+식품위생	2			2		
보건+간호	3			3			보건+간호	3			3		
의료기술+간호	2			2			의료기술+간호	2			2		
시설+방재안전	1	1					시설+방재안전	1	1				
행정+해양수산 +시설	1	1					행정+해양수산 +시설	1	1				
전산+방송통신 +시설	1	1					전산+방송통신 +시설	1	1				
사회복지+간호	1			1			사회복지+간호	1			1		
방 호	1	1					방 호	1	1			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운 전	14	6	1		7		운 전	14	6	1		7	
위 생	1	1					위 생	1	1				
건축운영	1	1					건축운영	1	1				
통신운영	1		1				통신운영	1		1			
전기운영	6	2			4		전기운영	6	2			4	
기계운영	7	1			6		기계운영	7	1			6	
열관리운영	1	1					열관리운영	1	1				
화공운영	1				1		화공운영	1				1	
사무운영	4	1	1		2		사무운영	4	1	1		2	
9급 소계	245	116	0	13	48	68(12)	9급 소계	281	128	0	13	48	92
행 정	61	33			6	22(12)	행 정	85	35			6	44
세 무	5	5					세 무	5	5				
전 산	3	3					전 산	3	3				
사회복지	63	22		3		38	사회복지	74	31		3		40
공 업	16	7			9		공 업	16	7			9	
농 업	1	1					농 업	1	1				
녹 지	3				3		녹 지	3				3	
해양수산	1	1					해양수산	1	1				
보 건	6			6			보 건	6			6		
환 경	3				3		환 경	3				3	
시 설	18	14			4		시 설	18	14			4	
방송통신	3	3					방송통신	3	3				
행정+사회복지	5					5	행정+사회복지	5					5
행정+전산	2	2					행정+전산	2	2				
행정+해양수산	1	1					행정+해양수산	1	1				
행정+보건	1	1					행정+보건	1	1				
행정+시설	4	2			2		행정+시설	4	2			2	
보건+의료기술 +간호	1			1			행정+방재안전	1	1				
방 호	2	2					보건+의료기술 +간호	1			1		

※ 괄호 ()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운전	21	9		3	9		방호	2	2				
시설관리	2	1			1		운전	21	9		3	9	
건축운영	1				1		시설관리	2	1			1	
전화상담운영	2	2					건축운영	1				1	
전기운영	1				1		전화상담운영	2	2				
기계운영	10	3			7		전기운영	1				1	
화공운영	1				1		기계운영	10	3			7	
사무운영	8	4			1	3	화공운영	1				1	
연구직계	17	9			8		사무운영	8	4			1	3
학예연구사	11	8			3		연구직계	17	9			8	
환경연구사	5				5		학예연구사	11	8			3	
기록연구사	1	1					환경연구사	5				5	
지도직계	3	2			1		기록연구사	1	1				
농촌지도사	3	2			1		지도직계	3	2			1	
							농촌지도사	3	2			1	

【 관계법령 발췌본 】

관계법령	내 용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	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 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관계법령	내 용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	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3.10.>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2. 삭제 <2020.3.10.>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7.3., 2013.12.4.>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4.>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